

<b>의 안 번 호</b>	<b>1497</b>	<b>【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】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9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29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### 가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“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”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: 2018. 10. 29.(월)
- 취득대상 재산
  - 건물 증축 : 3층 ⇒ 4층 (증축면적 : 190 m<sup>2</sup>)
  - 사업비 : 1,000,000천원 (옥상정원 213m<sup>2</sup> 공사비 포함)

### 다. 취득 세부내역

#### 울산 다봉행복센터 조성

- 1) 주관부서 : 복지경제국 여성가족과
- 2) 취득 재산현황
  - 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  
(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)
  - 취득재산 : 건물 증축면적 190m<sup>2</sup>, 옥상정원 조성
  - 용도지역 : 일반주거지역
  - 총사업비 : 1,000백만원(공사비 840, 자산취득비 106, 기타 54)

3) 취득사유

- 주민의 협동·소통 공간, 돌봄 공간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공간 필요
- 맞벌이 가정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공동체 실현 및 일·가정 균형을 위한 다함께 돌봄 공간 기반 조성

4) 주요시설 : 북카페, 휴게실, 조리실(식당), 집단지도실, 놀이실, 사무실, 옥상정원

5)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라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**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계획에 의하면 울산 다봉행복센터 조성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, 그 중 국비 5억원으로 50%, 시비 및 구비 각각 2억 5천만 원으로 50%를 차지하고 있음
- 취득재산(안)의 내용을 살펴보면
  - 지역 공동체 복원 및 맞벌이 가정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7. ~ 11. (생 략)
- ② (생 략)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· 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1.20.>

④ ~ ⑤ (생 략)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**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 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1. 사업목적 및 용도

2. 사업기간

3. 소요예산

4. 사업규모

5. 기준가격 명세

6. 계약방법

③ ~ ⑦ (생략)